

## 2021년 규약 개정(안)

개정 前	개정 後	비고
<p>제 55 조【부서】 본 조합에 다음과 같은 실을 두며, 필요 시 그 산하의 업무에 따른 국(부)을 둘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무처</li> <li>2. 조직처</li> <li>3. 정책실</li> </ol>	<p>제 55 조【부서】 본 조합에 다음과 같은 실·<u>처</u>를 두며, 필요 시 그 산하의 업무에 따른 국(부)을 둘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무처</li> <li>2. 조직처</li> <li>3. 정책실</li> </ol>	조문 변경
<p>제 61 조【단체교섭】 ① 본 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, 본 조합이 교섭대표 노조가 되는 경우 위원장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은 있으나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체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교섭권을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.</p>	<p>제 61 조【단체교섭】 ① 본 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, 본 조합이 교섭대표 노조가 되는 경우 위원장은 단체교섭 및 체결권<u>을 가진다.</u></p> <p><u>② 규약 제21조 4호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정기 임금협약 및 정기 단체협약</u></li> <li><u>2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</u></li> </ol> <p>③ 위원장은 교섭권을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.</p>	조문 변경
	<p><u>부 칙(2021.03.00)</u></p> <p><u>제 1 조【시행일】본 규약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 2 조【준용】본 규약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</u></p>	부칙 변경